

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2. 12. .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안이유

-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가 '92. 12. 31자로 시한이 만료되어
- 동조례의 존치기간 시한연장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(지기01210-897)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 시한연장

현 행	개 정
이 조례는 1992. 12. 31일 폐지한다.	이 조례는 1995. 12. 31일 폐지한다.

의안내용

- 조례 존치 시한을 1992. 12. 31에서 1995. 12. 31로 연장

참고자료

- 관계법령 :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없음
- 기 타 :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

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칙 제2항(폐지규칙)중 “1992년 12월 31일”을 “1995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
부 칙	부 칙
①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	①(시행일).....
②(폐지조례)이 조례는 1992년 12월 31일 이를 폐지한다.	② (폐지조례) 1995년 12월 31일
부 칙	부 칙
이 조례는 1990년 12월 31일부터 시행 한다. 1992년 12월 31일부터